

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[]지정
[]지정변경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
신청기관 (법인)	기관명(법인명)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	
	대표자	전화번호	
	주소	법정동 코드	
지정사항	질병 및 검사항목		
	병성감정책임자 성명		
	병성감정담당자 성명		
변경사항	변경하려는 사항[기관명(법인명),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, 주소, 질병 및 검사항목]		
	변경사유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 신청 시 가. 조직·인원 및 사무분장표 1부 나. 가축병성감정책임자 이력서 1부 다.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라.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1부 2.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변경 신청 시 가.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원본 1부 나.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- 가.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 - 나.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다.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.
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- 나.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

처 리 절 차

